

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32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년 8월 일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개정이유

-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일부 불합리한 규제관련 조문의 삭제와 일부조문의 정비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

주요골자

- 행정규제 관련 조문삭제 정비
 - 수입증지 판매인 판매소 폐지신고 의무화 삭제(안제11조제2항)
 - 판매인 또는 기타 관계자가 판매장소(주소지)변경신고, 판매인 사망신고, 30일 이상 미판매 및 주소불명신고, 판매인 무능력자 신고 의무화 삭제(안 제15조)
 - 판매인 보유 수입증지중 오염, 훼손에 따른 증지교환시 그원인이 판매인의 고의 과실의 경우 교환이 불가토록한 조문 삭제안(제26조)

신·구조문대비표 : 별 첨

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제목중 "판매폐지" 및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12조중 "제17조제4항에 준하여 그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" 를 "소속기관
 민원실근무 공무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" 로 한다.

제15조를 삭제한다.

제20조제2항중 "제10호" 를 "제9호" 로 한다.

제25조제1항중 "지정" 을 "신고" 로 한다.

제26조를 삭제한다.

별지 제8호 서식 및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하고, 별지 제10호 서식을
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별지 제8호서식

수입증지판매인명의(위치)변경신고서					
신고번호		제 호		신고년월일	
기 신 고 자	판매소위치		명의 위치 변경 요구 자	판매소위치	
	주소			주소	
	성명			성명	
	주민등록번호			주민등록번호	
명의(위치)변경사유					
<p>위 사유에 의거 판매인의 명의(위치)를 변경코자 신고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 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고인 주소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성명 (서명 또는 날인·무인)</p> <p>충청북도지사 귀하</p>					

별지 제9호 서식

월	일	카드번호	금일까지 카드금액 (A)	전일까지 카드금액 (B)	금일결손(C)		금일발생 (A-B-C)		결재		
					매수	금액	매수	금액	계	담당	과장

* 조성카드는 1일 1매를 원칙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개 정 (안)
<p>제11조(판매인의 경우, 위치변경, 판매폐지) ① (생략) ② 판매인이 증지의 판매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5일전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11조(판매인의 경우, 위치변경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삭제)</p>
<p>제12조(판매소의 위치) 증지판매소는 민원실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민원실내에 증지판매소 설치가 곤란할 경우 직장급고는 제17조제4항에 준하여 그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</p>	<p>제12조(판매소의 위치) 소속기관 민원실근무 공무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</p>
<p>제15조(판매 또는 관계인의 신고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판매인이나 기타 관계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. 판매인의 판매장소(주소지)를 변경하였을 때 2. 판매인이 사망한 때 3. 판매인이 30일이상 판매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소가 불명한 때 4. 판매인이 무능력자가 된 때</p>	<p>제15조 (삭제)</p>
<p>제20조(계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) ① (생략) ②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조정카드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,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</p>	<p>제20조(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) ① (현행과 같음) 제9호</p>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 (안)
<p>제25조(증지의 환매) ①증지를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부받거나 또는 타자치단체 증지와 교환할 수 없다. 다만, 판매인이 사망한 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판매의 폐지 및 지정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.</p>	<p>제25조(증지의 환매) ①..... <u>신고</u></p>		
<p>제26조(증지의 교환) ①판매인이 보유하는 수입증지로서 오염, 훼손 등으로 판매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도지사에게 교환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그 원인이 판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.</p> <p>②도지사는 제1항의 교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별지 제4호 서식의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.</p> <p>③도급고에서는 제2항의 불출증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지를 교환하여야 한다.</p>	<p>제26조 (삭제)</p>		